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09 발의연월일: 2020. 12. 1.

발 의 자: 강기윤 · 김선교 · 김희국

윤영석 • 김예지 • 엄태영

김희곤 • 이종성 • 김도읍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 정하여 지원하고 있음.

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는 대신 강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. 그러나 예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.

이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0조의2(공공형어린이집 지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(이하 "공공형어린이집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자는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③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, 3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.
 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 재지정 기준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30조의3(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

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
- 3.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9조 중 "제45조부터"를 "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공형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시·도별로 선정된 공공형어린이집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 공형어린이집으로 본다. 다만,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0조의2(공공형어린이집 지정)
	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
	운영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
	강화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
	른 어린이집 중에서 보건복지
	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
	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(이
	하 "공공형어린이집"이라 한다)
	으로 지정할 수 있다.
	②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된
	어린이집의 설치・운영자는 보
	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형
	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
	<u>야 한다.</u>
	③ 공공형어린이집 지정의 유
	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달의 다
	음 달 1일부터 3년으로 하고, 3
	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.
	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형어
	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
	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
	<u>있다.</u>
	⑤ 공공형어린이집의 지정 및
	재지정 기준・절차 및 운영 등

<신 설>

제49조(청문) 보건복지부장관, 시 제49조(청문) ------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 여야 한다.

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.

제30조의3(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 공형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- 2.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 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 한 경우
- 3.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 형어린이집 지정 및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.

장은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--제30조의3에 따른 공공형어린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 이집 지정 취소 및 제45조부터-